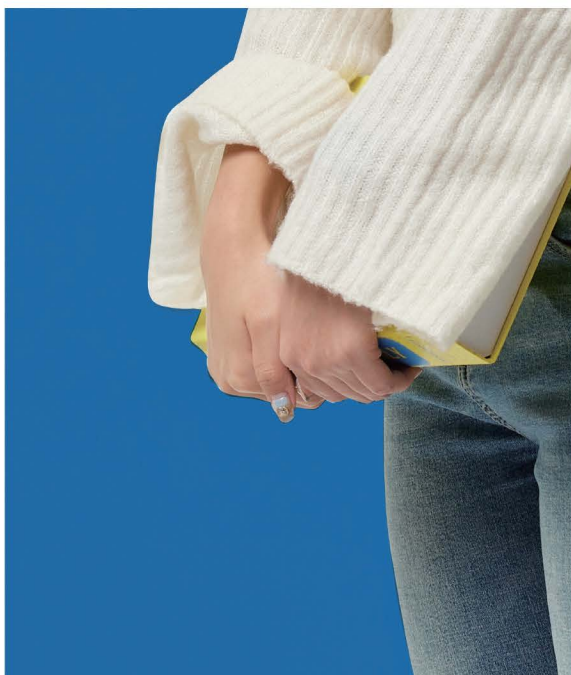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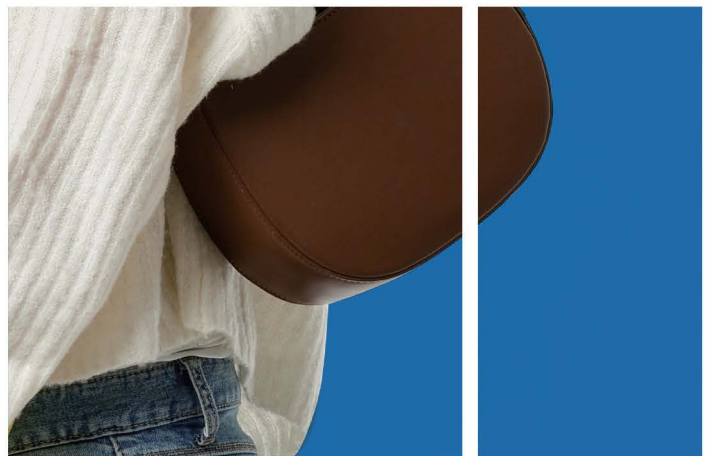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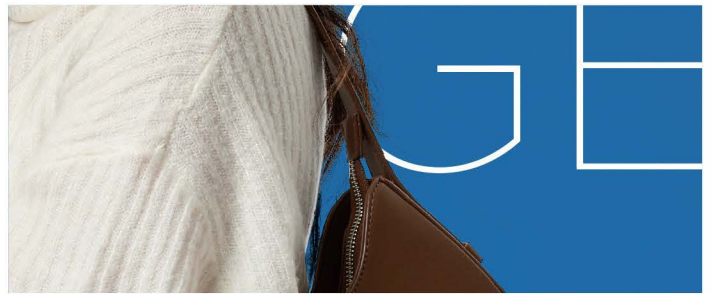




인하공업전문대학
INHA TECHNICAL COLLEGE

더 높은
단계로
도약



인하공업
전문대학

2023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현황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교육부 2014 ~ 2019년

세계수준의 전문대학육성사업(WCC) 교육부 2017 ~ 2019년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16 ~ 2021년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국토교통부 2017 ~ 2023년

메이커스페이스구축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19 ~ 2023년

고속연일학습병행(P-Tech)사업 고용노동부 2020 ~ 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부 2022 ~ 2024년

3단계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육성사업(LINC 3.0) 교육부 2022 ~ 2024년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58년 설립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배출된 11만 여명의 졸업생들이 전세계 산업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대학입니다. 현장중심 교육, 창의 인재 양성, 글로벌 고등직업교육 선도대학의 비전을 세우고 핵심 분야 2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추어 최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전문기술인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덕목,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하공업전문대학으로 오십시오.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최상의 시설과 교수진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변화 속에서 창조적 다양성을 추구하며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이인철



숫자로 보는 인하

인하는 가능성의 날개가 되기 위해 심 없이 노력합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교육으로 한국의 선도적인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며, 정보화시대를 지나 더욱 다변하는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전문 기술인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덕목,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개교연도



1958년

우리 대학은 올해로 6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현재까지 배출한 11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전 세계 산업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3
계열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능계열



24
학과

공학계열에 기계공학과 등 17개 학과, 인문사회계열에 항공운항과 등 5개 학과, 예능계열에 산업디자인학과 등 2개 학과가 있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신입생충원율

100%

신입생충원율은 매년 입학정원 대비 신입학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대학은 모집인원인 2,567명 전원을 100% 충원하였습니다.

인당 장학금 총액

372만원

우리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2021년 기준 무려 242.4억원입니다. (교외장학금 172.0억원, 교내장학금 70.4억원) 학생 1인당 372만원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기숙사 수용인원

604명

우리 대학 기숙사는 총 237실로, 604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 편의점, 세미나실, 스터디룸, 코인세탁실, 다용도실, 무인택배함,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시설 확보율

1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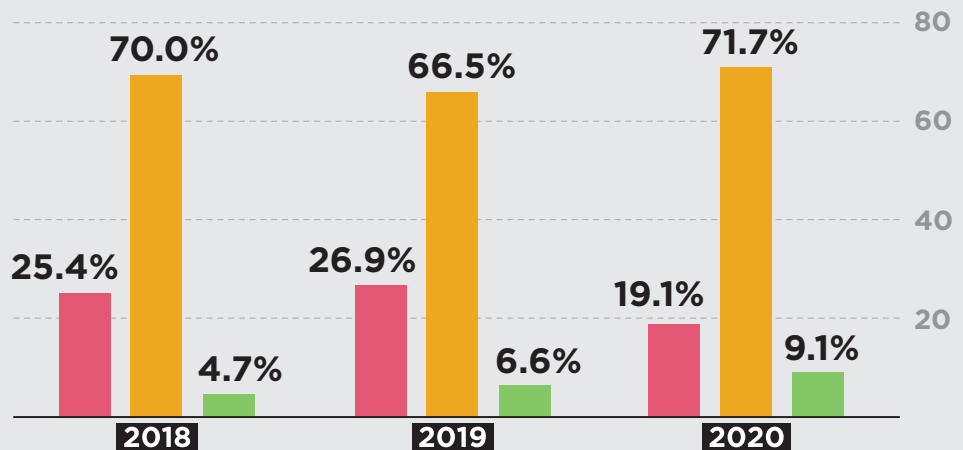
교사시설이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의 교육기본시설, 강당과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 실험실 등의 연구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학은 입학정원 기준 105.8%의 교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의 총 면적은 79,341㎡로, 2022년 현재까지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가지 최신 시설을 꼼꼼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6년 연속 CEO가 선택한 명품 전문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최근 3개년 기업규모별 취업률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2018-2020)

대기업
중견(소)기업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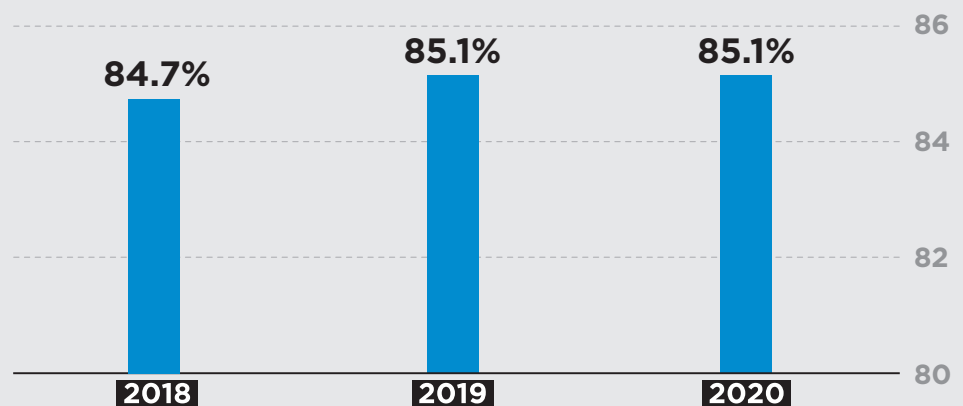


취업의 질이 다릅니다!

최근 3년간 유지 취업률
(2018-2020)



좋은 일자리
=
낮은 이직률



목 차

1. 주요사항 안내	2
2. 모집인원	3
3. 전형일정	4
4. 지원자격	5
5. 제출서류	8
6. 유의사항	9
7. 면접고사	9
8. 성적반영 및 선발방법	10
9.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0
10. 입학포기 및 등록(확인예치)금 반환	11
11. 불합격 처리 및 입학허가 취소	1
12. 전형료	12
13. 기타사항	13

첨부 : 특례입학지원신청서, 재외국민(2%) 지원자격 종합기록표,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수시2차 · 정시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 사항 안내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 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1. 주요 사항 안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재외국민(2%) 특별전형 지원자격 표준화 기준 안내>

- 재외국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구분	주요 내용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 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 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부모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구분	주요 내용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구분	주요 내용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모집인원

계열	학과명	선발여부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전체 (입학정원 2%)	학과별 최대 (학과별 입학정원 10%)		
공학계열	기계공학과	51명	2 명	○	○
	기계설계공학과		2 명	○	○
	메카트로닉스공학과(3년제)		1 명	○	○
	조선기계공학과		1 명	○	○
	항공기계공학과(3년제)		4 명	○	○
	자동차공학과		2 명	○	○
	전기공학과		2 명	○	○
	전자공학과		2 명	○	○
	정보통신공학과		2 명	○	○
	컴퓨터정보과(3년제)		2 명	○	○
	컴퓨터시스템과(3년제)		2 명	○	○
	건설환경공학과		2 명	○	○
	공간정보빅데이터과(3년제)		2 명	○	○
	건축학과 (3년제)		2 명	○	○
	실내건축학과(3년제)		2 명	○	○
	화학생명공학과		2 명	○	○
	재료공학과		2 명	○	○
인문사회계열	항공운항과		3 명	○	○
	항공경영학과(여)		2 명	○	○
	항공경영학과(남)		1 명	○	○
	관광경영학과		3 명	○	○
	비서학과(여)		3 명	○	○
	호텔경영학과		3 명	○	○
예능계열	산업디자인학과		1 명	○	○
	패션디자인학과		1 명	○	○
합계		총 51명 (단, 학과별은 명시된 최대 인원 이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1) 특례입학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한 후, 세부 자격요건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선발 대상
- 2)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대학 간 수시모집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음
- 3) 타 전형과 복수지원 불가(모집시기별 1개 전형의 1개 학과만 지원 가능)
- 4) 재외국민 총 51명 모집(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단,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 다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은 모집 인원내 제한 없이 선발 가능

- 5) 학과별 최대 선발 가능범위 내에서 학과 간 이월 선발
- 6) 수시 2차에서 우선 모집하며 미 충원 시 정시모집에서 이월하여 선발

수시모집 복수 합격자일 경우 복수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납부)이 가능하며, 수시모집에 합격한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뿐 아니라 합격한 모든 대학(교)의 입학이 취소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불합격 처리 및 입학허가 취소' 참조

3. 전형일정

구분		수시2차	정시	장소
입학원서 교부		인터넷 원서접수만 실시		
인터넷 원서접수		2022.11.07.(월) ~ 11.21.(월) 22:00까지	2022.12.29.(목) ~ 2023.01.12.(목) 22:00까지	www.jinhakapply.com
제출서류 마감		2022.11.21.(월) 17:00까지	2023.01.12.(목) 17:00까지	방문 제출 권장 <입학팀(5호관 B103호)>
면접 고사 일정	면접 일정 예약	2022.11.26.(토) 13:00 ~ 17:00	2023.01.16.(월) 13:00 ~ 17:00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일정 선택
	면접 고사	2022.12.03.(토) ~ 12.04.(일)	2023.01.28.(토)	우리대학 지정장소
합격자 발표		2022.12.15.(목) 16:00	2023.02.06.(월) 16:00	우리대학 홈페이지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2022.12.16.(금) 09:00 ~ 12.19.(월) 16:00까지	해당없음	등록고지서 내 지정계좌로 입금
최종(전액) 등록기간		2023.02.07.(화) 09:00 ~ 02.09.(목) 16:00까지		

1) 면접 실시 학과 ('7. 면접고사' 참조)

- 항공운항과, 항공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비서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지원자

2) 면접고사 일정 및 방법은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면접고사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됨

4) 제출서류의 경우 재외국민 서류 간의 심사 및 보완 안내를 위하여 위 서류제출 기간 내 방문제출 권장

4. 지원자격

공통 사항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예정)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 유형별 지원자격

구분		학생 및 부모의 최소한의 해외 재학 · 근무 · 체류 기간				
		학생		부모		
				해외 근무자		배우자
		재학기간	체류일수	근무기간	체류일수	체류일수
① 재외국민 (2%)	해외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외국민의 자녀)	중 · 고교 3년 (고교 1개년 필수)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역년으로 3년 (1,095일)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②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초 · 중 · 고교 전과정(12년)	—	—	—	—
③	북한이탈주민	고교 3년 (국내 · 외)	—	—	—	—

※ ①의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 학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 ①의 해외근무자의 범위 : 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

※ ①의 중·고교(연속/비연속 무관) 3년'은 2학기제 국가의 경우 6학기, 3학기제 국가의 경우 9학기를 뜻함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 충족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근거로 하여 이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세부자격 인정기준 6page 참조 (중요)

※ 용어의 정의

① 재외국민(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

— 해외근무자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 · 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체류일수 : 해외재직 및 재학기간동안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②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재외국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전 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③ 북한이탈주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나. 세부 자격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졸업자격 인정기준 (공통사항)		졸업자격 인정 기준시점 : 2023년 2월 28일 ※ 단, 고등학교 출신국의 학제 특성상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일본 등)
재외국민 (2%)	기본사항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이때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본인은 3/4 이상, 부·모 모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부모의 근무국에서 자녀의 재학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거주(체류) 및 근무 ◆ 아래 ②~④의 재학/근무/체류가 중첩되는 기간만 재외국민 지원자격 기간으로 산정 ◆ 기타의 경우 본 모집요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판단함
	①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외국계)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나, 부모 근무국의 지역적, 종교적, 이념적(공산권)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3국 수학을 인정 ※ 단, 부모의 근무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하는 제3국 수학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중·고등학교 과정만 인정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등에서의 수학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미 인정
	② 해외재학 인정기준 (자녀)	◆ 학생의 재학기간 : 해외 근무 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외국근무 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외국에 남아서 외국학교에 재학한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1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③ 해외근무 인정기준 (해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 해외 근무/사업/영업 등의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 해외 근무기간으로 인정 ◆ 해외근무자 종류 : 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 (관련 증빙서류 필)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④ 해외체류 인정기준 (해외 근무자, 배우자, 자녀)	◆ 부·모의 체류기간 : 자녀의 재학기간 및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 - 해외 체류기간 산정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 체류일수를 합한 기간 ◆ 위 ②기준의 학생 해외재학기간의(방학기간을 포함한)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 부모 : 2/3 이상 체류 필수 - 학생 : 3/4 이상 체류 필수 ◆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 학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구분		인정기준												
전과정 해외 이수자	동일학제 1개국 내 전과정 해외 이수자	◆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다른학제 2개 학교 이상에서 전과정 해외 이수자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table><tr><th>학년제</th><th>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th><th>비고</th></tr><tr><td>10학년 이하</td><td>미 인정</td><td rowspan="3">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td></tr><tr><td>11학년제</td><td>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tr><tr><td>12학년제</td><td>※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tr><tr><td>13학년 이상</td><td>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td></td></tr></table>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 제출서류

구분	해외근무자 자녀(2%)			해외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1. 특례입학 지원신청서(우리대학 양식)	공통 제출서류				
2.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입학, 전입, 전출, 졸업일 등이 정확히 기재)	○	○	○	○	○ (고교만) (학력확인서가능)
3.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한 모든 학교의 전 학기 성적이 정확히 기재)	○	○	○	○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	○	○		
5 재외국민 지원자격 종합기록표(우리대학 양식)	○	○	○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	○	○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	○	○	○ (학생)	
8. 여권사본(부모·학생)	○	○	○	○ (학생)	
9.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학생)	○	○	○	○ (학생)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12. 해외직접투자승인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 (상사주채원)				
13.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14.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		
15.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	○		
16.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17. 기타 증빙서류 (*개명, 입양, 부모의 이혼, 12년미만학제 등)	필요시				
18. 외국어 자격증 원본(보유자)	○	○	○		

※ 서류제출 필독사항

가. 입학전형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 우리대학 입학팀(우리대학 5호관 B103호)에서 원본대조필 후 사본 제출

나. 발급서류

- 국내발급서류 :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 해외발급서류 : 모든 해외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외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는 공증받은 번역본(한국어)을 제출해야 함** (재외한국학교 발급서류 제외)

다. ‘해외근무자 자녀(2%)’의 해외근무 관련 서류(10~14)가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불가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여타 ‘해외 근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 (10~14의 서류에 한함)

라. 1, 5, 7의 경우 우리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한글 작성 양식 별도 탑재

6. 유의사항

가. 우리대학에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지원자의 성명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법원의 관련 증명서 첨부

다. 전·편입학 시의 월반과 조기 졸업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외국학교와의 학제 차이 등으로 지원자의 총 재학 연수가 전 학교 교육과정(총 12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한 개 학기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라. 지원자가 재학한 해당국가(외국)의 전 학교 교육과정이 총 12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국가에서 초·중·고 교과과정 모두를 재학, 졸업(예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 학교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며, 원서접수 시 반드시 관련(12년 미달) 증빙서류를 해당국가의 교육부나 해당국가 주재 대사(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마. 입학원서에 전형기간 중 연락 가능한 국내 연락처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바.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세부사항은 본 전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의 세부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장에게 위임함

7. 면접고사

구분	면접고사 안내
면접학과	항공운항과, 항공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비서학과, 호텔경영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면접 예약안내	○ 면접 일자 및 시간은 예약 기간에 선착순으로 신청(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 면접고사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배정 ○ 면접고사 일자 및 시간은 변경 불가
준비물 (필수)	○ 지원자 본인 휴대폰(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행한 수험번호 확인)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중 택1)
복장 (수험생 준비)	○ 패션디자인학과 : 단정한 자유복 ○ 항공운항과, 항공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비서학과, 호텔경영학과 - 상의 : 흰색 반팔 티셔츠 - 하의 : 여학생(스커트+살구색 스타킹), 남학생(단정한 바지) - 신발 : 단화 ○ 하단 동영상 참조

면접고사
클린존(Clean Zone)
출입 안내



면접고사
복장 안내



면접 연습 및
준비 안내



※ 면접고사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합격 처리

※ 장애수험생의 경우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기관 내에서 보조인력 및 이동용 보장구 제공 <문의 : 032)870-2405>

※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험생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 평가 및 진행 방식 또한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비대면 면접 대상자, 평가 방법, 기타 진행 방식 등은 별도의 안내에 따름

8. 성적반영 및 선발방법

계열(학과)	성적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비고
공학계열 산업디자인학과	100% (적격자)	—	자격요건이 적격한 자에 한하여 선발
인문사회계열 패션디자인학과	적격자	100%	자격요건이 적격한 자에 한하며, 타 전형 지원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한 후 면접 적격자에 한하여 선발

※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어학자격증소지가 및 외국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

9.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수시 2차	정시
합격자 발표	2022.12.15.(목) 16:00	2023.02.06.(일) 16:00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2022.12.16.(금) 09:00~12.19.(월) 16:00까지	해당없음
최종 등록금 납부	2023.02.07.(화) 09:00 ~ 02.09.(목) 16:00 까지	
등록금(예치금) 납부확인	○ 등록금(예치금) 납부 후 반드시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납부 상태를 확인을 할 것 (정상 납부 시 등록금(예치금) 납부 “고지서” 버튼이 → “영수증” 버튼으로 변경 되어 있음) ※ 입금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등록금(예치금) 납부영수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발급	
주의사항	○ 입학 홈페이지(ipsi.inhatc.ac.kr)에서 합격증, 등록 고지서, 납부 영수증을 수험생이 직접 확인 및 출력 가능 ○ 등록확인 예치금 및 최종 등록금을 기간 내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됨	

※ 신입생은 입학학기(2023학년도 1학기)에 휴학 불가

(단, 4주(28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병역의무 이행,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

10. 입학포기 및 등록(확인예치)금 반환

구분	입학포기 및 등록(확인예치)금 반환 방법
포기신청	○ 우리대학 홈페이지(www.inhatc.ac.kr)
신청마감	○ 2023.2.23.(목) 오전 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나 반환 되지 않음) ※ 마감시간 이후 입학포기 및 반환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자퇴 처리함
반환방법	○ 반환 신청은 본인이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 ○ 오전 11시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오후 3시경에 반환 ○ 오전 11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익일 오후 3시경에 반환(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는 장학재단 반환지침에 따름
반환금액	○ 등록(확인예치)금 전액 ※ 입학 이후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유의사항	○ 입학 이후부터 등록금 반환신청자는 자퇴로 처리되므로 타 대학과의 이중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이중등록은 입학 후라도 입학취소 사유에 해당함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u>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u> ※ '11. 불합격 처리 및 입학허가 취소' 사항 참조

11. 불합격 처리 및 입학허가 취소

구분	불합격 처리 및 입학허가 취소 기준
자격위반 및 부정행위	○ 우리 대학 동일 차수에 복수로 지원한 자 ○ 지원자격에 미달된 자 ○ (해당시)면접고사에 결시한 자(신분증 미확인자 포함) ○ 제출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정정 또는 변조한 자 ○ 제출기한 내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자 ○ 학력 조회결과 지원자격 미달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입학(합격)을 취소함
등록 및 기타사항 위반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9.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참조)
대학입학 지원방법 및 이중등록 위반	○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12. 전형료

가. 전형료 및 면접고사료

구분	전형료	면접고사료	서류심사료	계
공학계열, 산업디자인학과	30,000원	-	5,000원	35,000원
인문사회계열, 패션디자인학과	30,000원	20,000원	5,000원	55,000원

※ 원서접수 마감 이후 원서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전형료 감면 및 환불 기준

구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에 따른 입학전형료 감면 및 환불
감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환불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입학전형료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 -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다. 전형료 감면 및 환불 신청

구분	방법	제출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증빙서류 제출 시 환불	모집시기 별 서류제출 기한 내
국가보훈대상자		

※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가 수급자대상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관련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경우 면접고사료, 서류심사료 및 업체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료 감면(25,000원)

※ 관련서류는 모집시기별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음

※ 관련서류 상단에 본인의 수험번호와 “전형료감면서류”임을 기재하고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13. 기타사항

가. 전년도(2022학년도) 입학금 및 한 학기 수업료

계열(학과)구분	입학금	수업료	합계
전 학과	269,000원	3,320,000원	3,589,000원

※ 등록금 변동 시 변동된 등록금으로 적용됨

나. 학생통학버스 문의 : ☎ 032) 860-8628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대학 입학팀 ☎ 032) 870-24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특례입학지원신청서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수시		정시		수험번호				
지 원 자	성명	한글			영문			
	국내연락처	주 소 :						
		전화번호	학생 연락처	추가 번호1	추가 번호2			
	지망학과	과						
	지원자격조건 (V체크)	☐ 해외파견 재직자 ☐ 현지 취업자 ☐ 현지 자영업자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 기타						
		기 간	학 력 사 항			학교소재지		
					국가명	도시명		
총 재학기간				년	개월 (학기)			
보 호 자	성명 (재외국민 2%)	부			모			
	외국 근무 사항 (재외국민 2%)							
	근무국	장소(도시명)		소속기관(지사)명		근무(거주)기간		

귀 대학에 특례입학 하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귀하

2023학년도 입학전형

[첨부2]

재외국민(2%) 지원자격 종합기록표

지원자 학교명 (초·중·고)	재학기간	우리나라 12학년제 기준 이수 학년 및 학기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또는 ▲																																						
		학교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학교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학교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학교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학교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학교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학교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학교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학교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학기)																								
비 고		※ 해당 학기를 온전하게 이수하였으면 ●, 그렇지 않다면 ▲ 표시 ※ 출신 학교 국가의 학제를 우리나라 12년 학제와 비교하여 정확히 작성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13학년의 경우 해당 없을 시 빈칸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초·중·고교 과정 총 13년 이수자만 필요)																																						
지원자 재학관련 특이사항 기재 (중복학기, 일반, 학제차이 등)		:																																						

해외 근무처명 (회사명 등)	재직기간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상)	재직 시 우리나라 12학년제 기준 학생의 해당 학년 및 학기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또는 ▲ 근무지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직기간 : 년 개월																										
	~	● 또는 ▲ 근무지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직기간 : 년 개월																										
	~	● 또는 ▲ 근무지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직기간 : 년 개월																										
	~	● 또는 ▲ 근무지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직기간 : 년 개월																										
	~	● 또는 ▲ 근무지 소재지(국가,도시) : 총 재직기간 : 년 개월																										
비 고		※ 학생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해당학기 기간에 온전하게 재직하였으면 ●, 그렇지 않다면 ▲ 표시 ※ 재직기간의 경우 동일 국가에서 학생의 재학기간과 겹치는 기간만 인정																										
해외 근무자 재직관련 특이사항 기재		:																										

구분	체류기간 (체류시작 ~ 체류종료)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12학년제 기준 학생의 해당 학년 및 학기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해당국 체류일수	~	● 또는 ▲												$\frac{3}{4}$	$\frac{3}{4}$	$\frac{3}{4}$	$\frac{3}{4}$	$\frac{3}{4}$	$\frac{3}{4}$	$\frac{3}{4}$	$\frac{3}{4}$	$\frac{3}{4}$	$\frac{3}{4}$	$\frac{3}{4}$	$\frac{3}{4}$	$\frac{3}{4}$		
		체류지(국가,도시) :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해외근무자 해당국 체류일수	~	● 또는 ▲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체류지(국가,도시) :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해외 근무자의 배우자 해당국 체류일수	~	● 또는 ▲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frac{2}{3}$	
		체류지(국가,도시) :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체류일수기재	
비 고		※ 각각의 1개 학년마다 학생의 경우 3/4, 부모의 경우 2/3 이상을 온전하게 온전하게 체류하였으면 ●, 그렇지 않다면 ▲ 표시 ※ 체류일수의 경우 해외 근무자의 해외 근무기간 및 지원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과 일치하는 일수만 카운트 인정 ※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체류 일수가 일치하여야 함																										
해외 체류일수 관련 특이사항 기재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서명) 보호자 : _____ (서명)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귀하																												

※ 온전한 재학, 재직, 체류 여부 산정을 위한 '1개 학년의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 학개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 : 편입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
- 졸업학년의 경우 : 졸업일자까지

※ 동일 시기에는 해외근무국가, 해외재학국가, 해외체류국가가 모두 일치해야 함 (해외 근무국이 중간에 변경 되었다면, 학생의 학교 소재국과 해외 체류국도 동일하게 변경됨이 원칙)

※ 해외재직기간, 해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외 체류일 수 카운트 인정 (방학기간도 모든 기준 동일 적용)

※ 모집요강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작성 바라며, 기타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팀(032-870-2400~3)으로 문의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2. 2. 7.>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함께 적어 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 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210mm×297mm[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재외국민(2%) 관련 FAQ

1. 학기 중복과 관련된 지원자격 충족 및 미충족 예시

•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미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 ~ G3-1 중 1개 학기만 G4-2 ~ G5-1 중 1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기타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판단함

2.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 기준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2학년 ~ 7학년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8학년 ~ 10학년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11학년 ~ 13학년

※ 11학년제 이하에서 고등학교를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의 12학년제 대비 부족기간 만큼 해당 대학에서 이수 하면 고교과정으로 인정

3. 재학 · 근무 · 체류 기간 충족 및 미 충족 예시

• 충족 사례

해외근무	재직기간 3년 (1,095일 이상)
학생재학	6개 학기 재학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체류	학생 3/4, 부모 2/3이상 체류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해외근무	재직기간 3년 (1,095일 이상)
학생재학	6개 학기 재학기간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체류	학생 3/4, 부모 2/3이상 체류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이 원칙이나,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단, 이때 학생의 재학기간만 축소 변경 되는 것이며, 재직기간 및 체류일수의 기준이 함께 변경 축소되는 것은 아님.

• 미 충족 사례

해외근무	재직기간 3년 (1,095일 이상) 미만
학생재학	6개 학기 재학기간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체류	학생 3/4, 부모 2/3이상 체류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해외근무	재직기간 3년 (1,095일 이상)
학생재학	6개 학기 재학기간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체류	학생 3/4, 부모 2/3이상 체류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세부사항은 본 전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대학 재외국민 심의위원회의 세부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장에게 위임함